

전기사업법 시행령

<목 차>

- 1.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 2.전기사업개시 전 산지중간복구명령에 대한 이행 의무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 성 자	이름	김창수
	담당부서 (과)	신재생에너지정책 과		직급	6급
	국장	최우석		연락처	044-203-5367
	과장	오승철		이 메 일	kcms6959@korea. kr

2020. 7. 27.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의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2.규제조문	제4조의3		
	3.위임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05.19 ~ 2020.06.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사업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고지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법률로 의무화(전기사업법 개정. 공포 '20.3.31) - 법적 절차를 통해 반대 민원으로 인한 행정부담 및 사업지연 사례를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조기 해소할 필요		
	7.규제내용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사업규모의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해 지역 일간신문 등을 통해 사업의 내용을 사전고지토록 규정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지역주민 민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3천킬로와트 이상 연료전지 사업에 한해 사전고지를 의무화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 예정자 ○ 이해관계자 : 발전 공기업(남동. 중부. 서부. 동서. 남부발전 등 5개사)		
	9.규제목표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사업규모의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해 지역 일간신문 등을 통해 사업의 내용을 사전고지토록 규정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 지역주민 민원 가능성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3천킬로와트 이상 연료전지 사업에 한해 사전고지를 의무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일간신문 등을 통한 사전고지에 약 4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적기 공사진행에 따른 지체상금 회피 등의 사업자 편익이 90만원 이상으로 나타나 피규제 대상의 비용대비 편익이 우수		
기타	12.일몰설정	해당없음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3(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① 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사전고지를 하려는 자는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지역(행정구역 경계부에 위치하는 경우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설비용량, 사업개시예정일, 운영기간 등)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신설법인인 경우에는 신청자의 최대주주를 포함한다) 4.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고지를 시행한 자는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전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 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등은 그 결과 및 이에 따른 의견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발전사업허가 심의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의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14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허가신청 7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 2.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는 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발전사업(단, 용량 3

현 행	개 정 안
	<u>천 킬로와트 이상에 한한다)</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사회 소통 부족 등으로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과 갈등 사례 발생
- 정부는 `18.5월 관계부처 합동(산업부, 국조실, 기재부 등) 「재생에너지 3020 민관공동협의회」를 통해 사업내용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를 포함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방지대책을 발표
-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 개정(‘20.3.31 공포)을 통해 사전고지를 의무화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개정법률 시행일(10.1일) 이전 위임사항에 대한 후속 개정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사전고지 절차 설정(근거 :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5개 발전공기업 (남동, 서부발전 등)	○ 규제안에 대한 서면 의견수렴(‘20.4) : 의견없음	해당없음
<입법예고(‘20.5~‘20.6월)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산림청 (6.2)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모든 지역에 사 전고지 필요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수용
산림청 (6.2)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의견을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 의무 화 필요	3M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은 지자체에 발전사업 허가권을 위임 (법 시행령 제62조)하고 있는 바, 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
해수부	사전고지 대상에 해역이용	지역수용성 제고를 위해 수용

(6.3)	영향평가 대상 사업 포함 필요	
환경부 (6.3)	사전고지 방법에 시·군·구 등의 정보통신망 등을 포함 필요	지자체 여건에 맞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고지 내용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알리게 수정 반영(지자체 의견 등 반영)
환경부 (6.3)	사전고지 내용에 의견수렴 제출 시기 및 방법을 포함 필요	입법례를 고려하여 수용(시행령 제16조의2)
환경부 (6.3)	사전고지 대상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최소면적인 5천제곱미터로 확대 필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수부 의견을 반영 예정

3. 규제목표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수용성 향상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지역 사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으로 주민 수용성 향상이 필수적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대상 사업을 중심으로 발전사업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토록 하여 규제의 목적을 달성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前 관련 사업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사항으로 기술규제와는 무관

- 경쟁영향평가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에 한해 사전고지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유발하는 사항 없음

- * 환경영향평가 대상 : 태양광·풍력·연료전지는 100MW 이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 입지(보전관리지역 등)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 5,000㎡ 이상(태양광 약 380kW, 풍력 1MW 규모)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 50~100MW 해상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 : 설비용량 3MW 이상

- 중기영향평가

- 사업규모의 크기에 따라 차등하여 중기영향 미미
- 타 입법례(환경영향평가법)를 참고하여 규제를 차등화 하였으며, 비용대비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미미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 정보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정량모델
판단 근거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위한 필수절차인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제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
④ 대상 업종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 유사사례 분석

	- 환경영향평가법 사례를 참고하여 분석(보전관리지역, 태양광 가정) ① 380kW이하 발전소 : 환경영향평가 미실시 ② 380kW ~ 100MW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③ 100MW 초과 : 환경영향평가 실시 ☞ 차등화 대상 결정 - 타법에서 발전설비 및 개발 규모에 따라 환경 규제수준을 달리하고 있는 바, 해당 기준에 맞춰 규제수준을 차등화하여 대상 설정
⑥ 차등화적용 여부	☞ ① 소규모 : 고지 면제, ② 중규모 : 허가신청 7일전 고지 완료, ③ 대규모 : 허가신청전 14일전 고지 완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유럽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정보 공유(고지) 실시중

* 출처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환경법과 정책 제15권, 이상훈, 윤종권)

- 미국 아이오와주의 경우 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신청서 제출 10일 이내 지역신문 발행 또는 구역 1마일 이내 주민에게 우편발송 고지

* 출처 : (WINDEXCHANGE) 상업용 풍력에너지 변환시스템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본 일부지역의 경우(시즈오카/아이치현), 대규모태양광 및 풍력설비 설치에 대해 지구자치회 주민 대상으로 사전설명회 개최 의무화

* 출처 : (일본 환경청) 풍력발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가이드라인, 후지산 경관 등과 재생에너지발전 설비 설치 사업과의 조화에 관한 조례

○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의 규제준수 의무는 개정법률(법 제7조제5항제5호)로 부여

*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⑤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생략>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생략>

-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일간지 등을 통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전고지를 규정하였으며, 피규제자 입장에서 비용대비 편익이 큰 바 준수 가능성은 큰 것으로 판단

○ 규제 차등화 방안

- 타법(환경영향평가법) 사례를 참고하여 발전설비 용량과 개발규모에 따라 규제수준을 차등화하여 설정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법상 전기사업 허가기준에 명시적으로 사전고지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 가능함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 가능성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8.5월 관계부처 합동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
- '20.3.31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공포('20.10.1일 시행예정)
- '20.4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서면 의견 수렴(5개 발전공기업)

2. 향후 평가계획

-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개선사항 도출하여 제도개선 추진

3. 종합결론

- 재생에너지의 환경 및 주민 친화적인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사전고지 절차 필요
- 법률에서 위임한 사전고지 절차를 규정하되, 사업 규모별로 차등화해 소규모 사업자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바람직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0.88	-0.88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0.88	-0.88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발전사업 내용 사전고지 비용
비용항목	외부서비스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지역일간지 광고비(400000)
근거설명	○ (비용) 지역 일간신문 등을 통한 사전고지 비용은 발전사업 허가 신청前 1회 고지하는 것으로 가정시 사업자당 약 40만원 예상 * 중앙일간지 기준, 지역일간지는 약 10-20만원 예상

☐ 간접편익

(정량)세분류	발전사업자
활동제목	민원으로 인한 발전소 준공지연
편익항목	민원해소
비용	886,418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text{용량(kW)} \times \text{설비투자단가(만원/kW)} + \text{사업지중 EPC비중(\%)},$ $\text{지체상금율(\%/일)},$ $(\text{일})(380 \times 1200000 \times 0.2777 \times 0.0005 \times 14)$
근거설명	○ (편익) 민원으로 인한 발전소 준공지연 가능성을 사전고지를 통해 회피 가능하며 사업자당 최소 90만원 이상의 편익 발생 예상 * 산출근거 : (용량) 380kW × (설비투자단가) 120만원/kW × (사업비중 EPC 비중) 27.7% × (지체상금율) 0.05%/일 × (민원처리기간) 14일 * ① 380kW(소규모 환경대상 최소 용량), ② 27.7%(상업용 발전소 기준, BNEF), ③ 0.0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공사분야 지체상금률), ④ 14일(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상 민원 처리기간)

--	--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기사업개시 전 산지중간복구명령에 대한 이행 의무화		
	2.규제조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		
	3.위임법령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05.19 ~ 2020.06.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전력거래 전 신속한 중간복구 이행을 통해 안전관리 제고와 국민 불안을 해소		
	7.규제내용	○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전기사업개시 전 산지중간복구 완료 ○ 산지중간복구 미완료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요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정지 명령 가능		
	8. 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 피규제자 : 태양광·풍력설비를 산지 내 설치하려는 발전사업자 ○ 이해관계자 : 지방자치단체, 보전협회, 사방협회 등		
	9.규제목표	○ 산지 내 위치한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자가 산지복구 완료의무를 준수하여 발전사업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및 난개발 완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편익분석 대상에 미포함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기타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조의2(산지중간복구) ①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의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법 제9조제4항의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 중간복구 완료(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증명하는 확인증 혹은 제5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정지명령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 발전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사업정지를 명할수 있고,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거래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받고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를 완료한 자는 사업정지명령에 대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발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정지명령 해제신청서와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 완료(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를 증명하는 확인증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정지명령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법 제31조의2제3항 본문에서 “대통

현행	개정안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생략> <신설> [별표1의2]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 (제5조의2제1항관련)	<u>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풍수해, 태풍, 한파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2. 부지를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3.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설비의 사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제62조(권한의 위임·위탁)<생략> 바. 법 제31조의2제2항의 사업정지 및 제3항의 유예 결정								
	[별표1의2] 전기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 (제5조의2제1항관련)								
	<table><tr><th>위반행위</th><th>근거법조문</th><th>처분기준</th><th>과징금금액</th></tr><tr><td>10의2. 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td><td>법 제12조 제1항제10의2호</td><td>사업정지 6개월</td><td>해당없음</td></tr></table>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과징금금액	10의2. 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0의2호	사업정지 6개월	해당없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처분기준	과징금금액					
10의2. 법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2조 제1항제10의2호	사업정지 6개월	해당없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현황)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39조 제2항의 산지중간복구 명령이 있을 경우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산지중간복구명령에도 불구하고 산지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기 생산 및 판매를 진행

□ (추진배경)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공사과정에서 절토·성토 비탈면 등에 대한 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마,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등 안전사고 발생

⇒ (정부개입)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간복구를 완료한 후 전기사업을 개시토록 하여 안전관리 제고 및 국민 불안해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 내용) 산림청장·지자체 명령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를 위해 필수적인 계통연계(계량기 봉인) 절차에서 한전·전력거래소가 산지중간 복구 완료 여부를 검사하고 복구를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계통연계를 금지

○ (선택 근거) 산지중간복구명령의 근거법인 산지관리법 제41조의2 및 전기사업법 제31조의2는 발전사업 허가권자의 사업정지라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과의 정합성을 고려시 허가권자를 통한 규제가 타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	-------	------

한국태양광 산업협회	○ 계절적 요인에 대한 유예 사유 부여 필요	○ 계절요인에 대한 유예사유를 시행령 제19조의2 제5항 제1호로 규정
한국풍력 산업협회	○ 풍력의 경우 부지가 넓어 순차적으로 산지복구준공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필요	○ 순차준공에 대한 근거조항을 시행령 제19조의2 제5항의 제2호로 규정
<입법예고('20.5~'20.6월)를 통한 의견수렴 결과>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산림청	○ 동일한 의미의 용어 통일 (중간복구 완료를 증명하는 확인증)	○ 일부 수용(1항 조문을 수정하여 법 문언 중복을 피하며 용어 통일)
	○ 예외사유 축소(기온에 의한 식재 원료 부적합 사유만)	○ 불수용(실제 공사환경을 반영한 예 외 규정이 필요하며 담당기관의 판 단에 따라 유예허용 여부, 유예 기 간 등 종합 판단하에 제한적 허용 가능)
	○ 순차복구의 예외사유 삭제	○ 불수용(상위법률에 명시된 사유로 삭제 불가)
	○ 전력수급 안정에 대한 예외사유 삭제	○ 불수용(전력수급에 긴급히 필요한 사유는 극히 예외적이며 중대한 공익적 사유에 해당하는 바 유예 필요)
	○ 산림청장에 정지명령 유예시 서면 통보	○ 불수용(법해석상 산업부장관이 산 림청장에게 유예여부 통보 의무화 는 지나치며, 통보 후 산림청장 및 관할청의 조치도 불분명)
SK E&S	○ 산지복구 3개월 이내 착수시 유예 허용	○ 불수용(이미 계획된 복구기간을 도 과한 후에는 3개월 이내 착수 예 정 계획만으로 유예를 허용할 충 분한 사정이라 볼 수 없음)

3. 규제목표

- 산지 내 위치한 태양광 풍력 발전사업자가 산지복구명령 이행의무를 준수하여 발전사업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및 난개발 완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고도 복구의무를 미준수로 토사유출·산사태 등 안전사고와 지나친 산림훼손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

* '16년부터 '18년까지 290곳의 산지복구 미준공 발전소가 전기를 판매

- 이에 따라 「산지관리법」의 개정('19.12)으로 산지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않고 전력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 산림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발전사업정지를 요청 가능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전기사업 개시신고 시 산림청장의 준공검사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기술규제에는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해당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중간복구의무를 불이행하고 전력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동일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사업규모 등을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부적절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해당사항 없음

① 규제 영역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산지중간복구의무에 대한 미이행시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로서 일몰 불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네거티브 리스트		
사후 평가관리		
규제 샌드박스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해당사항 없음

III.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지자체가 개발행위 준공검사 시에 산지중간복구준공검사 확인증을 제출토록 하고 있어 규제 준수 가능성 충분
- 임야 태양광은 개발행위준공검사 필증 제출 후 REC를 발급*토록 제도화되어 규제 준수 가능성 충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8조 제2항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개정('19.12)를 통해 사업개시 3년 미만의 발전사업자에게 1년에 1회 이상의 현장점검 의무 부여하고 있어 상기 현장점검에 따른 적발이 가능하며, 발전사업허가를 통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은 불요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9.10~'19.12월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법률 및 하위 법령 개정방향 대한 의견 수렴 진행
- '20.3.31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 공포('20.10.1일 시행예정)
- '20.4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산지 현장점검자인 환경보전협회, 사방협회와 피검자인 한국태양광 산업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 도출

3. 종합결론

- 금번 개정안은 산지중간복구명령을 받은 자가 산지복구 완료의무를 준수하여 발전사업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및 난개발 완화를 목적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간복구를 완료한 후에 전기사업을 개시토록 하여 의무이행을 제고
- 따라서, 동 규제를 도입하여 산지에 시공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불안해소에 따른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